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44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1. 4. 29.
판 결 선 고	2021. 6.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분 취득세 9,847,530원 및 농어촌특별세 83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 3. 17.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부부로서 사원명부상 C의 출자자들이다.

나. C는 설립 당시 지분 1좌당 액면가액을 10,000원으로 하여 총 10,000좌를 발행하였다. C의 사원명부에 기재된 2017년 지분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설립 당시 원고 A 3,000좌(30%), 원고 B 4,000좌(40%), D 3,000좌(30%)

② 2017. 12. 29. 원고 A 5,000좌(50%), 원고 B 5,000좌(50%)

다. 피고는 2019. 7. 12.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7. 12. 29. D 명의의 C 지분 3,000좌(30%)를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100%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C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가액에 30%의 지분증가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847,5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농어촌특별세 839,34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9. 8. 2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26.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D 부부는 유한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고, 원고들은 C를 설립하였는데, D의 남편과 원고 A의 오랜 친분으로 서로간 명의신탁을 해 주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D에게 C의 지분 30%에 대해 명의신탁을 하였다. 원고들은 D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사원명부상 명의를 회복한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서 정하는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E와 C의 출자금은 각 1억 원(10,000좌×10,000원)이다. E의 출자금 1억 원은 2017. 3. 28. 원고 A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출금되었고, E의 계좌에 사원명부상 출자자 F 40,000,000원, 원고 A 30,000,000원, D 30,000,000으로 입금되었다. 한편, C의 출자금 1억 원은 2017. 3. 23. D의 계좌에서 3회에 걸쳐 출금되었고, C 명의 법인계좌에 사원명부상 출자자 원고 B 40,000,000원, 원고 A 30,000,000원, D 30,000,000으로 입금되었다.

2) E와 C는 2017. 3. 31. [redacted] [redacted]구 G 창고용지 4,487㎡, H 임야 280㎡, I 임야 38㎡를 각 1/2지분을 매수하여 공유하였다.

3) F, 원고 A은 자신들 명의 E의 각 지분에 대하여 D로부터 명의신탁 받았음을 원인으로, D는 자신 명의 C의 각 지분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명의신탁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각 2018. 4. 30. [redacted]세무서장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9,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단순히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던 차명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식의 실질주주가 위 주식에 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자기명의로 개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 중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와 원고들은 공동으로 다가구주택 신축 임대업을 영위하려는 과정에서, D는 C의 지분 3,000좌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로서, 원고 A은 E 지분 3,000좌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자로서 각 사원명부에 등재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D 명의의 C 지분 3,000좌를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의 설립 당시 원고 A은 지분 3,000좌(30%)의 출자자로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고, C의 설립 당시 D는 지분 3,000좌(30%)의 출자자로 사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② 원고들이 소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D 부부와 원고들은 오랜 지인 사이로 다가구주택 신축 임대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다.

③ E의 출자금 전액은 원고 A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C의 출자금 전액은 D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는데, 이는 E의 실질 지분 보유자는 D이고, C의 실질 지분 보유자는 원고들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배치된다.

④ 원고들은 위와 같은 출자금의 입금에 대해 실수로 회사를 서로 바꾸어 입금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해명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⑤ E와 C는 2017. 3. 17. 같은 날 설립되어 [redacted] [redacted]구 G 외 2필지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을 공유하였다. 이는 D와 원고들이 E와 C의 각 공동 출자자 및 실질 지분 보유자로서 동업 내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음에 부합한다.

⑥ D와 원고들은 서로에 대하여 출자지분 명의신탁계약 해지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토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D와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와 같이 동업 내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도중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부과를 염려하여 사후적으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5.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8-19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 12. 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